

등록금환불

-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

등록금 환불 사유

1. 자퇴
2. 휴학만료 제적

등록금 환불 불가 사유

1. 휴학 : 자동으로 등록 이월되어 복학시 '무등록 복학'이라고 표기됨

등록금 반환기준

- 반환사유 발생일 / 반환금액
1.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>> 수업료의 5/6 해당액
 2.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>> 수업료의 2/3 해당액
 3.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>> 수업료의 1/2 해당액
 4.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>> 반환하지 않음